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377 호

2001년 3월 9일 금요일

차 려

조례

- | | |
|--|----|
|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3호(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 3 |
|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4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
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 | 5 |
|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5호(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
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 6 |
|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6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
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1 |

Fi Fi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3호(구월지구체비지매각공고)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5호(분묘개장(장수지구)공고) -----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6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16

회 관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1. 3. 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3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1조로 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제13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삭제하여 보조금을 원활히 관리코자 함.

○ 주요골자

-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목적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안 제7조)
- 제10조제1항, 제3항(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제1항, 제15조(감독)등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까지의 조문배열을 조정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1. 3. 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중복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삭제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원활히 관리코자 함.

○ 주요골자

- “제5조제4항(주민공개외 제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조정. (안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1. 3. 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 4 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 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 6 조(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 7 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시설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동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남동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과 차익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남동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자도 이용가능함. (제5조)
-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제6조)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제7조)
-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 (제8조)
-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제9조)
-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12조)
-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13조)

[별표1]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	

[별표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강 당	1회	무료	50,000원	
기 타		무료	무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1. 3. 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6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1. 구(군)별 쓰레기 봉투가격 편차 최소화
2.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을 현실화(자립도 45% ⇒ 70%로 상향조정)

○ 주요골자

-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24.4%) : 5ℓ (130 ⇒ 160원)
10ℓ (250원 ⇒ 310원), 20ℓ (500원 ⇒ 620원), 50ℓ (1,230원 ⇒ 1,540원),
100ℓ (2,440원 ⇒ 3,070원)
(제10조제3항 별표4).

(별표4)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제10조 제3항 관련)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가격(원)	용도
5	26×31	160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일반용봉투
10	33×40	310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일반용봉투
20	41×49	620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일반용봉투
50	56×67	1,540	공공용봉투, 일반용봉투
100	71×85	3,070	공공용봉투, 일반용봉투
30 (12kg)	48×57	2,350	가정사업계용봉투
60 (24kg)	60×69	4,700	가정사업계용봉투
125 (50kg)	80×90	7,870	가정사업계용봉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3호

체비지매각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01. 3.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매각재산

○ 매각현황 : 구월지구 (1필지 / 170.2㎡)

지 구 명	재산소재지	면 적(㎡)	예정가격(원)	비 고
구월지구	만수동905-2	170.2	131,054,000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등록접수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공고일로부터 2001. 3. 20(화) 12:00까지

나. 장소 : 남동구청 2층 도시정비과 도시행정팀

4.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1. 3. 20(화) 15:00

나. 장소 : 남동구청 2층 도시정비과 도시행정팀

5.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구의 물건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매 물건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수도권지역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때

-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할 때
-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 마.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 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8. 계약체결

-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합니다.
-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우리구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귀속조처됩니다. 다만,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을 제10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30일까지로 합니다.
- 다. 계약자의 명칭은 낙찰자로 합니다.

9. 대금납부방법

-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토지대금의 4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 2) 위 기간 경과시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한다.

10. 기타사항

- 가.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 나. 매각공고한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입찰전까지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 다.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 및 현장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않습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정비과(☎(032) 453 - 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5호

분묘개장공고

장사동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01. 3.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아 래

1. 분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05-2번지

2. 분묘 기수 : 총 17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이장

○ 무연분묘 :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4. 이장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공설묘지

5. 개장사유 :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 신 고 처 : ☎(032)453-2664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7. 공고기간 : 2001. 3. 10. - 2001. 4. 9. (1개월)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
본, 족보, 묘지신고증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할것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86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1. 3.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소매인구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상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1.3.5	2001-39	대상유통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74-26	미니스톱간석 명동점	
일반소매인	2001.3.6	2001-40	윤형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21	천일냉동 소비조합	